

SH-2023 청년사회적주택
공존하우스 석관점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2023.04.02



[에스아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공존하우스 개요]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82-16번지 외

■ 위치



■ 외관



■ 내부 사진



사회적주택 청년형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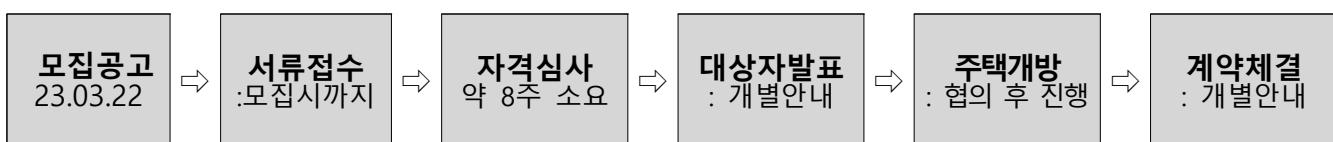
(모집공고일 : 2023. 04. 02)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운영기관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02]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I. 모집일정(운영기관 일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수정)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 **추가모집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로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II. 공급주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82-16외 (관리비 5만원)

공급대상	호실	면적(m ²)			임대조건(원)		모집호수
		계	전용	공용	보증금	임대료	
단독거주	201호	32.02	32.02	별도제공	25,326,000	329,900	1호
	202호	36.54	36.54	별도제공	28,702,800	373,800	
	203호	39.205	39.21	별도제공	30,632,400	399,000	
	204호	39.205	39.21	별도제공	30,632,400	399,000	
	301호	32.02	32.02	별도제공	25,808,400	336,200	
	302호	36.54	36.54	별도제공	29,185,200	380,100	
	303호	39.205	39.21	별도제공	30,873,600	402,100	
	304호	39.205	39.21	별도제공	30,873,600	402,100	
	401호	37.86	37.86	별도제공	30,270,600	394,200	
	402호	42.86	42.86	별도제공	33,526,800	436,700	
	501호	32.02	32.02	별도제공	25,808,400	336,200	
	502호	32.04	32.04	별도제공	25,808,400	336,200	

* 옵션사항 : 인덕션, 신발장, 옷장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SH공사 임대조건 인상 시 거주기간중이라도 입주자 임대료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정이율 5%이내)

III.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사항

-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22)**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자격요건

- 청년 중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 여부와 무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는 무주택여부만 확인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에도 인정
한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인정
청년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input type="checkbox"/> 본인과 부 또는 모(이혼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input type="checkbox"/>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 포함하여 산정
청년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input type="checkbox"/>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등이 달라 부적격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재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확인)
 - ③ 등본 분리 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기 준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00%이하	2,991,631	4,562,535	6,240,520
	110%이하	3,290,794	5,018,789	6,864,572
	120%이하	3,589,957	5,475,042	7,488,624

- ※ 청년①의 본인 및 부모 :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 청년①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 2인 110% 이하 소득 확인
- ※ 청년②의 본인 :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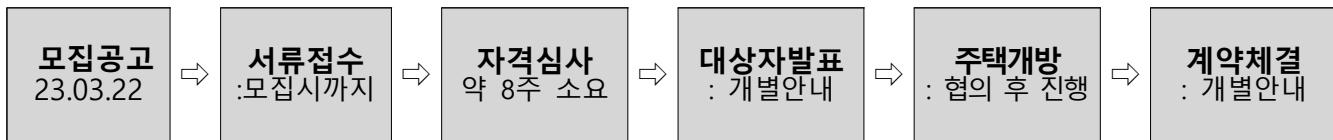
IV. 입주자 선정기준

○ 예비입주자

- 신청자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순번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신청한 운영기관 외 타 운영기관의 **청년형 사회적주택(일반형 불가)**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격검증은 기존 자료로 대체하며 운영기관별 별도 선정 기준만을 심사하여 입주
- ※ 단, 기존 예비입주자가 대기하고 있는 호를 제외한 공실에 입주 가능
- ※ A운영기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B운영기관 입주를 희망할 경우 A, B기관 모두에 이를 통보하고 두 기관이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

V.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고문 3p 모집일정 참고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 **추가모집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로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입주신청서 및 각종 동의 서식 작성 후 서류 스캔,

이메일(socialhousing@seempower.kr)로 발송

- **메일 제목** : 입주신청서_SH석관점_이름 (ex.입주신청서_SH석관점_홍길동)
- **파일명** : 이름_서류명 (ex. 홍길동_입주신청서, 홍길동_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계약시 **제출 서류 원본** 제출必

② 우편 접수 : 입주신청서 및 각종 동의 서식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등기서류는 접수 기간 마감일까지 도착분으로 한함

- 주소 : (우 08205)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28, 601호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주택본부 담당자 앞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③ 문의 : 02-999-3267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주택본부

<https://gongzonhouse.com/> 공존하우스 홈페이지 , help@seempower.kr 이메일 문의

VI.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유형(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① : 본인 및 부모, 한부모가족, 청년 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VII.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4.0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 서명 -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① : 본인 및 부모 - 한부모가족, 청년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④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⑤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제공 (불임양식)
주민등록등본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가족관계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2.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본인의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해당 자격	제출서류 및 내용	발급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	-주민센터
청년 ①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 청년 ① : 본인 및 부모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제공 (불임양식)
청년 ②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 청년 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제공 (불임양식)

3.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해당자만 제출)	발급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부모 이혼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되는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혼내역 표기) ※ 심사대상 부 또는 모 기준은 자격요건 하단 참조	-주민센터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초본	<input type="checkbox"/> 이혼한 부모가 모두 신청자 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센터

VIII.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m²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청용 차량 		
총자산	<td>금융자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td>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 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총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td> </tr> <tr> <td style="padding: 2px;">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td> </tr> </table>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IX.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p>■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차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f2e0;">입주자격</th><th style="background-color: #e0f2e0;">최대 거주기간</th></tr> <tr> <td>청년</td><td>6년</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거주기간은 현재 입주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다른 사회적주택에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 다시 최대 거주기간 6년이 적용됩니다. <p>※ 입주자격심사 없이 주택 또는 호수만 이동하는 주거이동의 경우 '기준 주택 거주기간과 합산됨을 유의'</p>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6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6년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기간 중에는 입주자격요건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총 20년)이 가능합니다. (원룸형, 단독거주형 입주자만 가능하며, 「기준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2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 가능)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갱신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최대5%)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자격요건을 불리하게 선택하여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기혼자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부모님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심사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자산 소명은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일반①, ②)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조회결과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 처리 됩니다.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임대인(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실 공동체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주택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실 공간이 존재하여 향후 해당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동체 활동의 운영 및 공동체 공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비용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X. 문의처

주소 및 연락처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 02-999-3267

입주신청 socialhousing@seempower.kr

문의 help@seempower.kr

공존하우스 홈페이지 <https://gongzonhouse.com/>

*입주 공고문, 입주신청서 및 주택 상세사진 확인

2023. 03. 22.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에스아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주택 석관점 입주(예정)자 입주신청서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XXXXXX (7자리까지 입력)

◎ 나이 : 만 세

◎ 성별 : 남 여

◎ 연락처 :

◎ 이메일 :

◎ 등본상주소지 :

◎ 지원유형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청년① 청년②

◎ 희망입주주택 :

서울특별시 석관동 182-16번지 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 입주예정시기 : 2023년 월 일

◎ 입주자격구분 및 유의사항

- 소득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당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 희망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선정이 취소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현황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자는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와 소득, 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에스아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주택 석관점 입주(예정)자 입주신청서②**

- ※ 각 항목당 150자 내외로 자유롭게 작성
※ 입주신청서②는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필수서류로 미작성시 입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1. 공동체에 대한 생각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한 기간

- 공동체에 대한 본인의 생각 :
-공동체 생활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 :
-조직 내부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 공동체 예시: 주거공동체 (셰어하우스, 사회주택 등),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NPO, 공동체 기반의 사회 혁신(사회 문제 해결 등)을 추구하는 모임 등

2. 자기소개서

- 입주 신청동기 :
-취미 혹은 관심사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보고 싶은 활동 :
※ 자유형식이나, 신청동기나 관심사 등을 포함하여 작성

위 작성 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고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 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우, 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을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

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기록관리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주택 소득 및 자산 등 입주 선정 관련 자격 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이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REDACTED]	[REDACTED] - [REDACTED]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서명	[REDACTED] 서명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REDACTED]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REDACTED] 년 [REDACTED] 월 [REDACTED]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증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증권금융회사
사 ·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